#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85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김종민·복기왕·이광희

맹성규 · 임미애 · 김영배

이용선 · 서영교 · 최형두

윤호중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원규정 이 외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참고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직 고위공직자 인사 관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독립성 관련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 의회는 대통령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와 자격 조건 및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발간함.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해 고위공직자 정무직, 전 문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문직 임기보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사지 침서를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신설).

#### 법률 제 호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주요 직책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요 직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주요 직책의 범위 및 주요 직책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 직책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기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제출 및 공개) ① 행정 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구성되 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 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 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 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 (이하 이 조에서 "주요 직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현 행	개 정 안
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인사혁 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12조의2(주요 직책 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공개) ① 행정 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구성되 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 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 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 (이하 이 조에서 "주요 직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직 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인사혁 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